

충청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업무 취급시간에 관한 규정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

1] 개정이유

- 충청지방우정청 소속 관서(출장소, 별정우체국 포함)의 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

* 인력계획과-3866(2024.5.10. 「2인 관서 실효적 지원방안 추진 계획」 수립·시행 알림)

2] 주요내용

- (명칭 변경) 「충청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점심시간 휴무에 따른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한 규정」을 「충청지방우정청 내 우체국 업무취급 시간에 관한 규정」으로 변경하여 시행함
- (조문 변경) 제1조(목적), 제2조(창구업무 취급시간) 제3조(창구업무 취급시간 조정)

개정 전	개정 후
(제1조) 충청지방우정청 관내에 위치한 관서(출장소, 별정우체국 포함) 중 점심시간 휴무를 실시하는 창구업무 관서의 취급시간에 관하여 필요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	(제1조) 충청지방우정청 관내에 위치한 관서(출장소, 별정우체국 포함)중 <u>점심시간 휴무 및 창구업무 취급시간이 조정된 관서</u> , <u>2인이 근무하는 관서의 취급시간에 관하여 필요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/u>
(제2조) 충청지방우정청 관내에 위치한 관서(출장소, 별정국 포함) 중 점심시간 휴무를 실시하는 관서의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별표 1과 같다.	(제2조) 충청지방우정청 관내에 위치한 관서(출장소, 별정우체국 포함)의 <u>창구업무 취급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, 점심시간 휴무를 실시하는 관서(2인관서 포함)의 창구업무취급시간은 [별표 1]과 같으며, 취급시간이 조정된 관서는 [별표 2]와 같다.</u>
(제3조) 제2조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 우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창구업무 취급시간을 <u>조정</u> 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.	(제3조) 제2조에도 불구하고 <u>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여 우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창구업무 취급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우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u>

㉓ 시행일 : 2024. 6. 1.자

충청지방우정청 훈령 제660호

충청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업무취급 시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2024. 6. 1.

충청지방우정청장

충청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업무취급 시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(안)

충청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업무취급 시간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 2]의 「창구운영시간 조정에 따른 창구업무 취급시간」을 대상관서에 적용한다.

부 칙<훈령 제660호, 2024. 6. 1.>

이 훈령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